

## 사전결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② 용도	주용도	부속용도			
	용도별 면적	용도명	면적		
		용도명	면적		
		용도명	면적		
규모	③ 건축면적 m <sup>2</sup>	④ 연면적 합계 m <sup>2</sup>	지하층 면적		m <sup>2</sup>
	⑤ 건폐율 %	⑥ 용적률 %			
	총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최고높이	m
⑦ 구조					
주차장 규모		면적 m <sup>2</sup> ,	대수		대
⑧ 주택형태			세대수		

「거주법」 제10조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경선을 시청합니다.

2019-07-29

신청인 (성명 또는 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신청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수수료 없음
------	--	-----------

## 근거법규

「건축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ul>
------------	---

## 유의사항

「건축법」 제10조 제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li> </ul>
----------------	---

## 작성방법

- ① 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 ② 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③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전통사찰은 4미터, 돌출차양 설치 총사는 3미터, 한옥은 2미터, 기타 건축물은 1미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부분,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하층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 ④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합니다.
- ⑤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 ⑥ "용적률"은 연면적 합계(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 ⑦ "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기타로 적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⑧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적으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적습니다.